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54

발의연월일: 2024. 9. 25.

발 의 자:정성호·김남희·김문수

김정호 · 박희승 · 안규백

윤후덕 • 이수진 • 이연희

정준호 · 최기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 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음.

그런데 학생 수와 학교 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 청은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행정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임.

이에 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1개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 해당 시·도의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,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명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하고, 시·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교육지원청의 설치와

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행정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4조).

법률 제 호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제1항 중 "1개 또는 2개 이상"을 "1개"로 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대통령령으로"를 "시·도의 조례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시·군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 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다.

③ 시·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그 관할 구역의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제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| 제34조(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| | |
| 등) ① 시·도의 교육·학예에 | <u> 두</u>) ① | | |
|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| <u>1</u> | | |
| <u>1개 또는 2개 이상</u> 의 시·군 | <u>게</u> | | |
| 및 자치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 | | | |
| 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 | | | |
| 육지원청을 둔다. <u><단서 신설></u> | 다만,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 | | |
| | 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| | |
| |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| | |
| | 는 2개 이상의 시・군 및 자치 | | |
| | 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육 | | |
| | 지원청을 둘 수 있다. | | |
|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| 2 | | |
| 명칭은 <u>대통령령으로</u> 정한다. | <u>시·도의 조례로</u> | | |
| | | | |
| <u> <신 설></u> | ③ 시・군 및 자치구의 의회는 | | |
| |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 | | |
| | 원청의 설치와 그 관할 구역의 | | |
| | 조정에 관한 의견을 교육부장 | | |
| | 관 또는 해당 교육감에게 제시 | | |
| | <u>할 수 있다.</u> | | |
| 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 | <u>④</u> ·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 | | |
| | 과 같음) | | |